

문서번호	인사처-570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9.01.18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7호

★차장	팀장	인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---

#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계획(안)

---

2019. 1

#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계획(안)

## 〈 관련근거 〉

- 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(안) - 인사처-284호(2016.1.13.)
-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 / '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(시장방침 10417호-(18.10.7))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

## □ 기본방향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 충족
-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생활임금제 준수

(2019년도)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수준(월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209H(시급)	243H(시급) *경비	전년도('18년, 209H 기준)
최저임금	1,745,150(8,350)	2,029,050(8,350)	1,573,770(7,530)
생활임금	2,120,932(10,148)	2,465,964(10,148)	1,925,099(9,211)

## □ 처우개선(안)

- 준공무직
  - 설정방향 :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 적용
  - 급여포(현재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월 급여				계	명 절 휴가비
	기본급	수당				
		급식비	교통비	처우개선비		
청소·주차·기타	1,492	100	100	176	1,868	설/추석 각 200
경비	1,837	100	100	25	2,062	설/추석 각 200

※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. 신규입사자, 퇴직자의 경우 발령일 기준 월할계산(15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 지급 및 15일 미만 근무자는 전액 미지급)

· 평가급 :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※ (보수월액×12)의 1% ~ 5%

\* 보수월액 : 기본급, 급식비, 명절휴가비

- 급여표(변경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월 급여						명 절 휴가비
	기본급	수당				계	
		급식비	교통비	처 우 개선비	보전 수당		
청소·주차·기타	1,562	100	100	176	183	2,121	설/추석 각 200
경비	1,854	100	100	25	387	2,466	설/추석 각 200

\*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 / 입·퇴사 등 신분 변동자의 경우 근무일 기준 일할계산

\*\* 통상임금 항목 : 기본급 + 수당(급식비, 교통비, 처우개선비)

-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 부족분 '보전수당'으로 지급
- 평가급 및 보수월액은 변경 전 동일기준 적용
  - 평가급 : (보수월액×12)의 1% ~ 5%
  - 보수월액 : 기본급, 급식비, 명절휴가비

○ 계약직원

- 설정방향 :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 적용
- 임금수준
  - ① 전문계약 :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<별표3> 기준 적용
  - ② 일반계약 : 별도방침에 의함
    - ※ 단, 정규직 대체근로자는 예산범위 내 정규직 임금수준 지급
  - ③ 일용계약 :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 준수

기본시간급(A)	수당(B)	통상시간급(C)
8,350원 이상	급식비 100,000원 / 교통비 100,000원 / 처우개선비 176,000원	10,150원 이상

\*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 / 입·퇴사 등 신분변동자의 경우 근무일수 기준 일할계산

\*\* 근로계약서 통상시간급(C)은 기본시간급(A)과 수당(B)을 포함하여 산정  
(연장, 야간, 시간외, 연차수당의 산정기준)

- ④ 단시간계약 : 일용계약 준용하되 수당은 근무시간 비례 지급

### 【 유의사항 】

해당부서에서는 부서별 예산, 직무성격, 근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2조 및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제5조에 따른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
### 행정사항

- 준공무직 및 일용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: 해당부서